

동두천시상패동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1981. 1. 19 조례 제926호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중 상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상패동 토지구획
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 약
90%이상이 사업의 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2001. 10. 19 본 사업 지구가 폐지됨으
로서 불필요하기에 폐지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“ 동조례 폐지 ”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상패동토지
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, 사업지구내 관계 소유자의
90%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2001. 10. 19일 본 사업지구가 폐지됨에
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